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76
----------	-------

발의연월일 : 2026. 3. 23.

발 의 자 : 김미애 · 김예지 · 엄태영  
우재준 · 김도읍 · 이현승  
김재섭 · 김희정 · 윤영석  
최보윤 · 김형동 · 김은혜  
서명옥 · 김소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난임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여전히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난임부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난임치료”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생 략)</p> <p>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u>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2. ~ 4.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u> <u>&lt;후단 삭제&gt;</u></p> <p>2. 「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p> <p>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p>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u></p>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